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2670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8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라. 상정결과 :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(2021년 9월 6일,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함('15.12.15.) ○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(1) 사 업 명 :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
- (2) 위 치 : 성북구 길음동 1286-8 서울·성북미디어문화마루
- (3) 규 모 : 지상 1~3층(연면적 2.925.23m², 전용 1.917.1m²)
- (4) 사업주체 : 시청자미디어재단(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) 서울센터
- (5) 주요시설: 디지털교육실, 장애인방송제작실, 편집실, 사무실 등
- (6) 주요사업
 - 미디어 교육 지원 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교육 등
 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
 -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
- (7) 출연금액(안): 285,660천원
 - 인건비 151,360천원, 임차료 85,600천원, 운영비 48,700천원
- (8) 출연의 필요성
 -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

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- 제5조(운영비 분담)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- 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- 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다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
 - ○「방송법」제90조의2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국가 및 <u>지방자치단체는</u>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.
- (2) 예산조치 : 2022 회계연도 예산편성
- (3)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 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 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- 서울시는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4자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

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한 바, 2017회계연도부터 운영비의 20%를 출연금으로 교부1)하고 있음.

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」

제5조(운영비 분담)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담한다.

- 1. (생략)
- 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-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1년 5월 27일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(舊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)의 개관에 따라 동 시설의 1~3층(전용 1,917.1 m²)를 사용하게 되면서²) 이를 소관하고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에 매년 임차료 8천6백만원을 지급할예정³)이며, 기존 노블레스 빌딩을 임차할 때와는 달리 전용 면적의 증가, 시설 증대 및 인력 확대에 따른 운영료의 증가로 세출예산 확대에 영향을 미쳤음.

〈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현황 〉

(단위 : 천원)

연 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(안)
총 운영비	421,625	433,435	438,690	843,500	1,452,300	1,428,300
서울시 출연금 (증감액)	84,325	86,687 (2,362)	87,738 (1,051)	159,388 (71,650)	286,689 (127,301)	285,660 (△1,029)
비고	보조금 편성	출연금 편성		센터 이전 ('20.11.)	성북미디어 문화미루 개관 (2021.5.27.)	

^{1) 2016}회계연도에는 센터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나「방송법」제90조의2제7항 및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」제5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2017회계연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교부 중임.

²⁾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의 준공은 2020년 8월이며, 이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0년 11월에 이전을 완료함.

³⁾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2020년까지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을 임차하였으며, 연간 임차료는 931만 원이었음.

이에 따라 2022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총 14억 2 천8백만원이며, 20%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서울시 시민소통기 획관은 2억 8천6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예정임.

○ 한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 재단 서울센터는 동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'서울 미디어 랩⁴)'의 민간위탁도 맡고 있는데,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미디어 교육강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〈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-서울 미디어 랜 연계사업목록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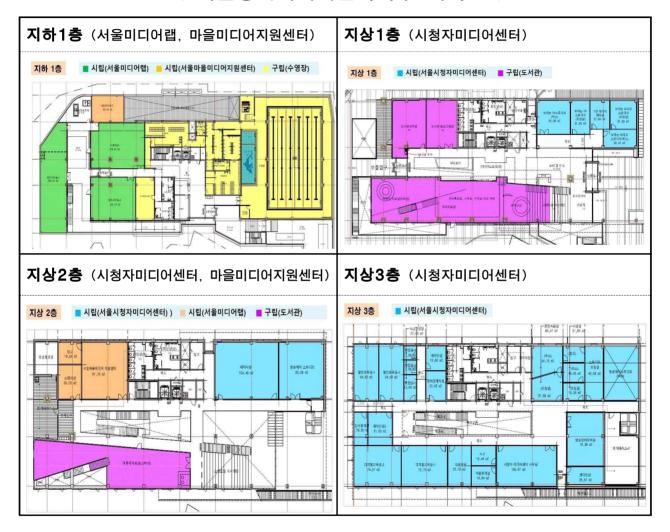
연 번	사 업 명	사업내용(참가업체)			
1	시제품 공동기획	청각장애인 민원처리를 위한 수어통역 단말기 '손말, 데스크' 개발 ㈜함께걷는미디어랩)			
2	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	TBS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(㈜실버넷티비)			
3	미디어 교육강좌 개설	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강좌(디지털미디어코딩, 웹드라마제작, 아나운서스피치) 개설 (소셜감성, 크랭크인, 찬스웨이브)			
K-테스트베드 구축·운 4 (3,4분기 예정)	V 데 V 트베트 그것 O G	- 서울센터 시설, 장비를 활용한 입주기업 시제품 테스트베드 설치 및 테스트 지원 ※ 설치장소 :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미디어체험관(1층)			
		시제품명 내 용 비 고 수어통역 단말기((주)함께걷는 소말.데스크 미디어(제)			
		지 기반 실감형 체험교육 단말기 (믹스비전(주)) 하다 기관 교육 함용			

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입주한 서울 성북미디어문화마루의 활용방안에 대해 서울 미디어 랩. 마을미

⁴⁾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등 공익적 스타트업과 미디어 관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를 통한 3년 미만의 미디어 교육 등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'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'으로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으며, 2020년 4월 1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로 민간위탁이 확정되었음.

디어의 시설과 기능의 중복·유사성, 차별점을 감안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상생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온 바, 2021년 7월 19일 문화본부 소관이었던 '서울 미디어 랩'과 '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'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되었음.

〈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배치도 〉



상기 사업들은 비록 물리적인 소관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통합되었을 지라도 향후 연계사업의 개발은 효율성의 제고로 서울성북미디어문화 마루의 활용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며, 향후 서울시 전체 실국의 미디어 관련 사업 담당자의 교육 등 시 전체 사업의 미디어 활용도를 높임으로 동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어가야 하겠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- 5. 토론요지 : 없음.
- 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 2670

제출년월일: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함('15. 12. 15.)
- 나.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

나. 위 치 : 성북구 길음동 1286-8 서울·성북미디어문화마루

다. 규 모 : 지상 1~3층(연면적 2,925.23m², 전용 1,917.1m²)

라. 사업주체 : 시청자미디어재단(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) 서울센터

마. 주요시설: 디지털교육실, 장애인방송제작실, 편집실, 사무실 등

바. 주요사업

- 미디어 교육 지원 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교육 등
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
-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

- 사. 출연금액(안) : 285.660천원
 - 인건비 151,360천원, 임차료 85,600천원, 운영비 48,700천원
- 아. 출연의 필요성
 -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워 필요

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- 제5조(운영비 분담)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- 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- 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○「방송법」제90조의2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국가 및 <u>지방자치단체는</u>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 회계연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 강이랑(☎2133-6440)